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추어야 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62조"를 "「건축법」 제49조, 제62조"로, "제51조제2항, 제87조"를 "제8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를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세대"를 각각 "30세대"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추는 것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

트 이상일 것

제13조의 제목 "(개별난방설비)"를 "(개별난방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1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허가권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가.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측정하여 7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일 것

별표 1의4 제8호 중 "KSB 2921"을 "KS B 2921"로 한다.

별표 1의5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별표 1의5 제13호 후단 중 "암소음"을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5호 및 제16호 중 "폐열회수형"을 각각 "열회수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후단 중 "제11조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6의 제목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1)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전시장"을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3) 중 "공연장"을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별표 1의6 제1호라목4)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1의6 제1호사목2) 중 "노인요양시설(국공립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한다)"을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별표 1의6 제1호자목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차목 중 "제29조"를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카목1)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